第110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
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

第1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(案) 1面
2. 서울特別市鐘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(案) 4面

1.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807

제출년월일 : 2001. 4. .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약사법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약국에 관한 사무 및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에 맞게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종전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국관리자를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였던 것을 약사법이 개정되어 승인 없이 약국 개설자가 지정하도록 규제 완화됨에 따라 위임업무 삭제(안 제5조 별표위임사무 중 제3호 자목)

나.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약사법이 개정되어 규제 완화됨에 따라 위임업무내용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(안 제5조 별표 위임사무 중 제4호 가목, 나목)

3. 개정근거

○약사법중개정법률 제6153호(2000.1.12)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없음

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3. 약국의 관한 다음의 사무란 중 "자. 약국 관리약사의 승인"을 삭제한다.

[별표]의 4.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란 중 "가.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"을 "가. 의료용구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한 사항 변경"으로 하고
"나.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"를 "나. 신고취소 및 업무의 정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〔별표〕

현 행	개 정 안
3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~ 아. (생 략) 자. 약국 관리약사의 승인 차. (생 략)	3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〈삭 제〉 차. (현행과 같음)
4.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 나.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다. (생 략)	4.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의료용구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한 사항변경 나. 신고취소 및 업무의 정지 다. (현행과 같음)

2.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808

제출년월일 : 2001. 4. .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하여 보건소 처방전에 의한 원외약국에서 조제시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외약국 조제 투약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건강보험증 소지 환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금액을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서울시 보조교부금에서 지출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)

3. 개정근거

○노인복지법(2000.1.12 법률제6124호) 제26조
○노인복지법시행령(2000.2.28 대통령령 제1637호) 제19조
○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지침
(2000.6.21 서울시의약65400-2584호)

4. 예산수반사항 : 서울시 보조교부금

○2000년 하반기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용액 : 747만 6,080원
○2001년 서울시보조교부금 : 1,775만 4,000원 확보

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7. 65세이상인 자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면제자 중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(생 략)	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(현행과 같음)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	②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	7. 65세이상인 자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면제자중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약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.